



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 운영규정

제정일	2023. 8. 1
개정일	2023.12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학칙 제22조의 2(교육과정의 연계운영) 제1항에 의거 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) ① 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(이하 “본 과정”이라 한다.)이라 함은 대학 입학 전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고교와 대학 간 학습연계 프로그램으로 고교와 대학, 산업체 간 운영 협약을 통해 시행한다.

② 고교, 산업체와 본 과정 운영 협약을 체결한 대학은 산업수요 변화에 따른 신기술 분야 교과목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 대학으로 진학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 3조 (교과목 개설 및 시기) ① 대학과 고교, 산업체 간 협약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설한다.

② 개설 시기는 매년 방학 또는 학기 중으로 한다. (개정 2023.11. 1)

제 4조 (교과목 개발) ① 교과목은 해당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개발한다.

②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직무역량 및 핵심역량을 적용하여 본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에 준용하여 개발한다.

③ 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을 위해 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 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23.11. 1)

제 5조 (교과목 운영) ①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출석수업으로 운영한다.

② 수업 방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한다.

제 6조 (교과목 편성 및 수강) 교과목은 각 1~3학점으로 편성하고, 해당 학과별 2개 교과목 이내로 개설한다. (개정 2023.11. 1)

제 7조 (교과목 평가 및 이수) ① 수업시간의 1/4를 초과하여 결석 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다.

② 교과목의 평가는 100점(출석 20점, 시험 80점) 만점으로 하고, 60점 이상 취득 시 Pass, 60 점 미만 시 Fail로 부여한다.

제 8조 (학점인정) ①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가 본 대학에 입학할 경우 본 대학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학점인정은 최대 4학점으로 하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③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 입학 학년도 1학기 종강 전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④ 학점인정의 대상은 소정의 연계 통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한다.

제 9조 (운영위원회) ① 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대학, 고교, 산업체 관계자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 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심의·의결하며, 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 운영, 평가와 개선,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掌한다. (개정 2023.11. 1)

⑤ 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은 고교-전문대 연계 통합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(신설 2023.12. 1)

제 10조 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연계 통합교육과정 시행지침 및 본 대학 제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